======= 【 기술보호와 법 】 ======== <<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법제도 >>

I.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1.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1) 개념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 부정경쟁행위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영업주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확보하려는 행위를 의미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차목은 카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예시적 유형에 해당 한다.

(2) 보호법익

- 영업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3) 지식재산제도와 관계

-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과 함께 지식재 산권법에 해당한다.
-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지식재산권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객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방법(행위규제)에 의하여 지식재산의 보호를 하고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아이디어탈취행위

(1) 배경

-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 2018년 개정 이전의 법에서는 아이디어 그 자체로는 상호나 상품 등의 성과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지 않았었다.

(2) 의의

- 2018년 법개정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 개정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이다.

3. 성과도용행위

(1) 의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기존 열거적, 한정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외에 보충적, 일반적 규정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이는 앞에서 나열된 유형 외에도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보호요건

-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어느 정도의 투자나 노력이 투임되어야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앞서 나 열된 각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법익에 대한 투자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나 노력에

======= 【 기술보호와 법 】 ========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여기에 투자는 경제적인 투자와 시간적인 투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적, 육체적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성과

-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고객에 대한 이미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같이 창작적인 것은 물론, 기존에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즈니스 플랫폼 등과 같은 것도 포함한다.
- 방대한 고객 데이터나 SNS 등을 이용한 고객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의 성과도 포함된다.

3) 위법한 무단 사용

-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상거래 관행 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이용이 특별히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경쟁 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 (예. 타인이 이룩한 성과가 해당 분야에 표준적인 것이어서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자신의 영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 예컨대 보다 개량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경제적 이익의 침해

-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한다는 것이다.
- 재산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더라도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경우 경제적이익의 침해라고 본다.

II. 기술탈취·유용 등 사례

1. 계약 전 아이디어·기술자료 탈취

(1)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 협력사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 【 기술보호와 법 】 ========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업체 A사는 대기업 B사의 기술협력사인 C사로부터 신축건물의 환기설비설계 의뢰를 요청받아 정식 기술거래계약 체결없이 상세도면,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B사 주관의 입찰 선정평가에서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경쟁업체인 D사에서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평가결과 A사는 입찰에서 제외되어 B사와 C사의 기술자료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설비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거래의 경우, 1차 수급기업이 원 도급기업을 핑계로 2차 수급 기업에게 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빈번히 발 생할 수 있다.
- 사전에 비밀유지협약을 포함하는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공할 대마다 특정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 비밀유지협약 : 상호 간 기술제휴,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 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 --> 거래 전에 비밀유지협약 체결 없이 유출된 기술자료는 중소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해석이 되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법원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근거를 판단할 때 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파악하므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거래 전에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납품제안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
- 금형제조업체 A사는 중견기업 B사로부터 납품계약을 제안받으면서 도면, 기계 사양 등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았다.
- (3) 대기업의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 그래픽 디자인 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가 주최하는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하여 제품 디자인, 광고카피 등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B사는 A사에 사전 동의없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A사가 제출했던 제품디자인, 광고 카피문구를 신제품 디자인에 적용하여 출시하였다.
- 주최 측의 제안 아이디어 권리 소유, 상장·상금 대가로 권리 이전 등 아이디어 권리 귀속에 대한 공모전 세부규정의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 (4) 컨소시엄 제안 과정에서의 기술탈취
- 교량시공전문업체 A사는 도로건설 설계 입찰에 참가한 대기업 B사의 컨소시엄 제안을 받

======= 【 기술보호와 법 】 =======

고 핵심 기술자료를 B사에 제안하였다. B사는 A사에 아이디어, 핵심기술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낙찰에 성공하였으나, B사는 핵심기술을 제공한 A사가 아닌 C사와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 기술임치제도

- 외부로 기술이 공개되기 전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자사의 기술임을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임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임치된 기술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5) 부품 샘플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복제품 제작
- 대기업 B사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에게 기술설명회를 요청하여 부품샘플을 제공받고, 타기업인 C사에 제공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시하였다. B사는 C사를 통해 생산된 복 제품을 직접 사용하였다.

2.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

- (1)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하여 경쟁사로 기술자료 유출
- 굴삭기 부품업체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납품단가 20% 인하를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다. B사는 A사와 거래과정에서 확보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C사에게 제공하여 동일 제품을 개발하게 하고 A사와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B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
- 대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전략에 따라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하도급거래의 기술침해 즉 기술유용행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특히 단가인하 명분으로 상세한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제3자와 비교견적을 위해 자연스럽게 경쟁기업에게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 하도급법 상 부당한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품질관리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탈취
- 대기업 B사는 제품 경쟁력, 품질확보의 명목으로 부품협력사 A사에 제조공정,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B사의 제품양산 취소가 두려워, A사는 B사로 각종 기술자료

======= 【 기술보호와 법 】 ======== 를 제공하였으나, B사는 A사의 자료를 C사로 유출하여 양산하였고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A사의 신고로 조사 중이다.

- (3)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경쟁사로 유출
- 설비성능평가 및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A사는 공공기관인 B사의 용역을 수행하면 서 기술절차서, 보고서 등 영업비밀을 제출하였다. B는 추가 용역발주 과정에서 A사의 영업비밀을 C사에게 제공하여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

● 용역계약시 기술자료 제공범위 확인

- 기술용역의 경우, 발주처에서 사후관리를 명목으로 기술거래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핵심기술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기술용역 체결단계에서부터 용역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별적인 비밀유지협 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술거래를 통해 해당 기술정보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3. 해킹, M&A 등을 통한 기술유출

- (1) 개인 휴대폰으로 기술자료 무단 촬영
- A사는 보안점검을 위해 CCTV를 확인하던 중 특허등록 상담을 위해 기업을 방문한 변리 사가 회사의 기계도면을 스마트폰으로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사는 해당 변리사와 다년간 거래로 비밀유지 서약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었다. A사는 기술유출신고 를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고 해당 변리사의 휴대폰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을 삭제조치하였다.

(2) SNS를 통한 기술유출

- 광고영화를 제작하는 A사에 2년간 재직한 B는 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컴퓨터 그래픽소스, 촬영본, 결과물 등을 개인SNS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거래처들에 기술자료를 유출하였다.

● 유의사항

- 회사에서 습득한 사업상 모든 정보 및 영업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지 않겠다는 보 안서약서를 입사·퇴사시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유출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해야 한다.
-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청구하고, 퇴직자가 개발한 기술의

======= 【기술보호와 법】========= 일체 권리는 회사에게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 (3) M&A 과정에서 기술자료만 탈취
- 자동차부품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인수의향을 듣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A사는 B사에 사전검토 목적으로 핵심정보와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을 전달하고 비밀유지협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기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인수 철회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A사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 기술보호 예방의 방안 >
-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한다.
-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www.ultari.go.kr)
- (2) 회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정기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4) 모든 직원은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한다.
- 비밀유지서약서 : 교육시에는 보안 정책 및 보안 세부 규정을 숙지하였다는 문구를 포함 하고, 프로젝트 투입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신분, 기밀 업무 범위 등을 서약서에 명시
- 전직금지약정: '재직 중 취득한 모든 기술, 경영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해당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이익에 대한 명칭이나 개요 도는 형태(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배합비율 등),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그 번호, 프로젝트 명칭이나 산출물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 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 (6)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할 때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7) 기술자료 제공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